

의안번호	2215830
의 퇴 인	박지혜 의원
회 답 일	2026. 3. 31.
추계번호	26A0025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른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에너지취약계층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800만원, 2031년 8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000만원(연평균 1,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50	—	—	—	—	50	10
에너지취약계층지원위원회(안 제8조)	8	8	8	8	8	40	8
합 계	58	8	8	8	8	90	18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을 지원하고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7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 실태조사)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현황 및 비용 부담 등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3	안 제8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위원회)	○ 에너지취약계층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취약계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5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4	안 제9조(중앙·지방 협력체계)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효과적 운영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너지공급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에너지취약계층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함(제1항) ○ 협의체는 연 2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5	안 제10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신청 등)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등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6	안 제12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 지원기관등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 1. 에너지이용권 지급 － 2. 냉난방 환경 개선 － 3.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제품 보급 － 4.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재량규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 5. 에너지 공급 기반 확충 - 6. 에너지요금 경감 및 비용 지원 - 7. 에너지 안전 이용 환경 조성 - 8.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 교육·홍보 - 9. 연료 전환 지원 - 10.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 11. 그 밖에 에너지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에너지 이용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6호에 따른 에너지요금 경감 및 비용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에너지공급자에게 보전할 수 있음(제2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시공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경영상태, 시공경험 등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자격기준 및 적격 여부 심사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함(제3항)	
7	안 제13조(통합 지원체계 구축)	○ 지원기관등은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제1항) - 1.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신청·상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 2.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에 대해 일괄 공고·접수 및 통합된 현장 방문·점검 체계의 마련 - 3.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관등을 위한 통합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 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사업 수행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 설명회 또는 교육의 실시 - 5. 지원 사업의 설계 및 개선 과정에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참여 절차의 마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의 연계, 표준화된 자료 관리, 시스템 간 연동 등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8	안 제14조(민간 참여 활성화)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제2항) - 1. 민간 기업, 비영리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에너지취약계층지원을 위한 기술 또는 서비스 등을 제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공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조치 - 2. 민간 부문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조치 - 3. 민간 부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조치 - 4. 그 밖에 민간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9	안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취약계층지원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10	안 제21조(재정 지원)	○ 국가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제1항) ○ 국가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음(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11	안 제22조(기금을 통한 지원)	○ 정부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출연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 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음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 2.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재량규정
12	안 부칙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신청조사, 확인조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그 밖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실시를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6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
2	안 제7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 실태조사)	X	○ 현재 「에너지법」에 근거한 에너지복지 실태 조사 사업(2026년 7억 300만원)이 수행 중 이나, 제정안의 조사 대상이 보다 포괄적이 므로 현행 사업비의 확대가 예상됨. 다만, 현시점에서 조사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어려우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3	안 제8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 위원회)	○	—
4	안 제9조(중앙·지방 협력체 계)	X	○ 중앙·지방 에너지취약계층지원협의체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너지공급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데, 제정안만으로는 참여자 수를 특정하기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5	안 제10조(에너지취약계층지 원사업의 신청 등)	X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 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6	안 제12조(에너지취약계층지 원사업)	X	
7	안 제13조(통합 지원체계 구 축)	X	
8	안 제14조(민간 참여 활성화)	X	
9	안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X	
10	안 제21조(재정 지원)	X	
11	안 제22조(기금을 통한 지원)	X	
12	안 부칙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X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은 “에너지취약계층”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동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시점에서 제정안의 지원대상자 및 개별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정하기 어려워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해 추계함
- 제정안의 “에너지취약계층”은 소득 수준, 주거 여건,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빈곤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거나 실제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안 제2조제2호)¹⁾
 - － 현행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의 지원대상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말함(「에너지법」 제16조의 2제1항제1호)
 - 참고로, 현행 「에너지법」에 근거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주요 에너지복지 사업은 다음과 같음
 - － 2026년 예산상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은 144만 세대, 연탄쿠폰 사업의 지원 대상은 40,173세대 규모임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빈곤”이란 가구의 소득, 주거 여건, 에너지 가격,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에너지취약계층”이란 소득 수준, 주거 여건,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빈곤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거나 실제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라. 제7호에 따른 에너지접근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마. 그 밖에 에너지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표 2] 「에너지법」에 근거한 주요 에너지복지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	회계 (소관)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결산	2026 예산
에너지바우처 (하절기바우처)	에특회계 (기후부)	47,143	48,805	80,450	69,271	—
에너지바우처 (동절기바우처)	에특회계 (기후부)	156,267	171,337	490,176	407,710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특회계 (기후부)	—	—	—	—	488,844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에특회계 (기후부)	—	—	—	—	3,31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에특회계 (기후부)	1,674	1,551	1,023	—	—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구입지원)	에특회계 (기후부)	—	74,964	86,016	—	—
에너지바우처 (사업운영비)	에특회계 (기후부)	1,872	3,485	4,463	4,560	1,872
연탄쿠폰	에특회계 (산업부)	23,600	23,854	23,478	19,824	23,14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기후기금 (기후부)	70,121	105,730	108,333	107,593	108,575
전력효율향상 (취약계층에너지복지_LED 보급지원)	전력기금 (기후부)	11,950	10,574	10,836	7,300	6,570
전력효율향상 (취약계층에너지복지_취약 계층고효율가전구매지원)	전력기금 (기후부)	—	13,920	17,168	12,528	10,000

주: *하절기바우처와 동절기바우처가 '26년부터 에너지바우처로 통합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제정안의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때 비용추계 대상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하며, 5년마다 수립하는 주기를 고려할 때 2027년에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함
- 유사 연구용역의 사례를 참고할 때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에 5,000만원으로 예상됨
 - 유사 연구용역 사례로는 “에너지복지제도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산업통상부, 2019년, 4,800만원),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체계 개편방안 연구”(기후에너지환경부, 2024년, 5,658만원), “에너지 바우처 도입 방안 연구”(산업통상부, 2013년, 4,700만원) 등이 있음

[표 3]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기본 계획의 수립(안 제6조)	50	—	—	—	—	50	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에너지취약계층지원위원회(안 제8조)

- 안 제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위원회를 두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에너지취약계층지원위원회 설치로 회의 운영비용이 발생하며, 동 비용은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으로 함
 - 안 제8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경우 제정안은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기획예산처의 예산안편성지침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동안 민간위원 1인당 회의 참석수당 단가를 25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에너지취약계층지원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800만원(8명×25만원×4회)으로 추계됨
 -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는 정원의 과반인 8명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안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 4] 에너지취약계층지원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에너지취약계층지원위원회(안 제8조)	8	8	8	8	8	40	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